

2013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의안 번호	221
----------	-----

제출년월일 : 2013. 04.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정부의 고금리 지방채 차환(借換) 계획과 관련 교부세삭감분 세입보전(2009년) 차환 예산반영을 위하여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41,80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18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80백만원이 증액된 287,680백만원,
특별회계는 54,12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없음.

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채및예치금회수수입 6,18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변동없음.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재무활동비 6,18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변동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0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의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